

국가생명윤리정책원·전북특별자치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MOU 체결

-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19세 이상 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 전국 1위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전북도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 약속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우수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 최병관)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3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프라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전북도민의 생애 말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8.2.시행)』에 근거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힘써왔다.

- 2024년 말 기준 19세 이상 인구의 6.2%, 65세 이상 인구 20.0% (다섯 명 중 한 명)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며,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30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19세 이상 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이 10.7%로 전국 가장 상위 지자체로 지역별 평균(6.2%)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지역보건의료기

관(보건소) 전수(전북도 100%, 전국 평균 70%)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MOU 체결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우수한 사례로 홍보하고 감사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제도 접근성 및 인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MOU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등록과 같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제도 공동 홍보·캠페인, 제도 관련 전북도 노인일자리 등 우수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3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우)이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MOU 체결식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과 협력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더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 향상 및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번 MOU 체결과 같이 각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민들이 생애 말기 자기결정을 존중받고,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사업관리부	책 임 자	본 부 장	조정숙 (02-778-7505)
		담 당 자	부 장	문용준 (02-778-7001)

□ 제도 개요

-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6.2월 제정, '18.2월 시행)
- (사업수행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지정
- (제도참여기관)
 - (의료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468개소('24. 12월말)
 - * 자체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 참여 위해 13개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760개소('24. 12월말)
 - *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주요 용어>

-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 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의사 2인의 임종과정 판단 + 환자 의사 확인(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연명의료계획서, ③가족 2인 진술) * 환자 의사 확인 불가 시 ④가족 전원합의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 (말기환자)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통상 3~6개월)
- ☞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통상 2~3일)

참고2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운영 현황('24. 12월말)

□ 제도 참여기관

- (의료기관) 총 468개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 또는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5인 이내로 구성·설치되어 제도와 관련 심의, 상담, 교육 등 수행

구분	대상기관 수	설치·등록기관 수	등록률(%)
상급종합병원	47	47	100.0
종합병원	331	217	65.6
병원	1,410	47	3.3
요양병원	1,359	149	11.0
합계	3,147	460	14.6

*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호스피스 전문기관) 7개 기관 등록

- (등록기관) 총 760개소 지정

구분	지역보건 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계
기관수	175	204	35	2(239*)	105	521(760*)

* 239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출장소 포함

□ 제도 운영 현황

